#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8

2018. 11. 2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11.23. 상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시와 건축을 매개로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시민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으며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예정임
- 이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 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비엔날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 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재)서울디자인재단
  - 관련법령
    -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주요사업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
  -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다각적 홍보
  -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방안 수립 및 운영
-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및 도시건축의 진흥·교류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서울의 디자인 등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 키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따라 2017년도 제1회 행사를 성

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건축·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활용한 성공적 사업수행 및 서 울디자인재단 조직의 장점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 필요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조 례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①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다. 기 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8. 기타 출판업, 주차장운영업, 디자인상품 도·소매업 및 수출,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라.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마.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4.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동의안은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는 서울과 세계 도시 간의 도시·건축현안에 대한 국·내외적 교류와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2년(홀수년) 단위로 개최되며, 2017년에 제1회 행사('17.9.2.~'17.11.5. 총65일)를 개최하였고 내년에 제2회행사('19.9.~'19.11. 약 2개월)를 개최할 예정임(붙임1).
- 서울비엔날레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소관하나, 서울디자인재단 내에 행사 전담조직으로 서울비엔날레사무국을 설치 · 운영코자 하는 것 으로 파악되며, 제1회 행사도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비엔날레 사

무국('15.6.~'17.12.)이 수행한 바 있음(붙임2).

○ 출연금은 사무국 설치·운영비용과 비엔날레 행사·사업비용으로 약 46억원(4,589,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17년 출연 금(55억원)과 비교시 약 9억원 감액된 규모이나(붙임3), '17년 출연연금으로 편성되었던 운영비·홍보비 등 일부 비용이 '19년에는 도시공간개선단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결과로서, 제2회 서울비엔날 레 전체 예산규모(54억원)는 제1회(56억원)와 비슷한 수준임.

〈서울비엔날레 관련 예산 편성 현황(자료: 도시공간개선단)〉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디자인 재단 출연금	소 계	11,244,850	68,850	787,000	5,500,000	300,000	4,589,000
	도시공간개선단	10,457,850	68,850	-	5,500,000	300,000	4,589,000
	문화본부	787,000	-	787,000	-	_	_
출연금 외 관련 예산	소 계	2,676,451	_	379,319	122,532	1,331,600	843,000
	도시공간개선단	2,553,919	-	379,319	-	1,331,600	843,000
	문화본부	-	_	_	-	_	_
	서울디자인재단 (수익금)	122,532	-	-	122,532	_	_
합계		13,921,292	68,850	1,166,319	5,622,532	1,631,600	5,432,000

## "행사 타당성"

○ 제1회 서울비엔날레 수지분석 결과(붙임4), 총수입은 67억 8천8백 만원이고 총지출은 66억 9천1백만원으로, 약 1억원(9천7백만원)의 직접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수입 대부분이 공공재원(서울시 예산)이고 행사 개최로 인한 수입(임장권·기념품 판매 등)은 1억 2천2백만원에 지나지 않음.

공적 행사에서 수익 창출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부가적 요소로 여겨 질 수 있으나, 판매 증대, 민간후원금 확보 등을 통해 공공재원 의존 도를 점차 낮출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 서울비엔날레의 정량적 성과는 관람객 소비지출액을 산정한 직접경제 효과와 비용지불의사를 산정한 경제가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정 한 파급효과 등으로 평가되었으며, 직접경제효과 149억원, 경제가치 65억원, 파급효과 136억원 등 총 350억원으로 산출되어(붙임5), 행사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제1회 서울비엔날레 정량적 성과 평가(자료: 도시공간개선단)〉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수 식	결 과	
 직접경제효과		관람객이 방문함으로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	관람객 수 ×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14,913,496	
경제가치		행사에 대한 대가(입장료)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행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	행사 관람객 수 × 1인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6,494,816	
파급효과	생 산 파급효과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추진 사업비 ×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	9,089,300	
	부가가치 파급효과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추진 사업비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4,582,050	13,671,350

서울의 주요 도시 장소와 건축 디자인 등을 주요 소재로 하여 도시· 건축의 국제적 현안을 선도하는 역할을 정착화한다면 세계적인 행사 로 자리매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세계 각지에서 서울의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시스템, 도시재 생사업 등에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바, 서울시의 도시·건축 국제행사 개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며 서울도시마케팅을 보다 선진화하는 의미도 높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비엔날레 외에도 서울건축문화제가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는데(붙임6), 관련된 행사들을 서울비엔날레(프리비엔날레 포함)와 통합 개최하는 것이 행사의 재정적·행정적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 및 상설 전시, 도시·건축 아카데 미, 서울의 관광·답사 가이드 등과 연계 운영하는 것이 서울비엔날레가 행사기간에만 집중되는 일회성을 넘어 사업의 연속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출연 타당성"

○ 서울비엔날레는 행사의 전문성과 연속성(격년 개최) 그리고 행사의 세계적 비전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비엔날레사무국을 설치하여 제1회 행사를 수행한 바 있고, 내년 제2회 행사도 동일 형태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

〈제2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체계(자료: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문화본부	디자인재단	비엔날레 사무국	
역할/기능	서울비엔날레 관련	돈의문 박문관 DDP 대관 및		서울비엔날레	
	정책총괄, 예산확보	마을 대관협조	행정지원	기획 및 운영	
담당업무	기획업무, 총감독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홍보지원, 출연금 교부, 도시건축센터/도시건축박물관 관리	대관업무	대관업무 보수 지급 등	총감독 자문위원회 운영 전시/홍보/행사 기획 및 운영 수익사업 추진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킹 기록물 관리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b>⇔</b>	(재) 서울디자인재단 (비엔날레 운영조직 구성예정)		
관계	- 정책총괄, 행정지원 (팀장외 3명)	공동주최	- 서울비엔날레 기획 및 운영 (총 11명 범위내 구성예정 : 진행중)		

○ 그러나, 제1회 서울비엔날레를 주관한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 사업범위를 패션·디자인으로 집중하고 있어 서울비엔날레 주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단 내 서울비엔날레사무국 운영도 현재 폐지('17.11.)된 상태로서¹),

도시공간개선단은 제2회 서울비엔날레까지만 서울디자인재단에 의 뢰하고 이후에는 서울비엔날레 재단법인을 신설하여 행사를 운영 코자 하고 있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가칭) 설립 추진(자료: 도시공간개선단)〉



○ 서울비엔날레를 주관할 수 있는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이 있음에 도 별도의 재단법인을 신설하는 것은(붙임7), 조직의 외연적 팽창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서울디자인재단의 적정 사업범위와, 서울비엔날레의 확장성, 도시 공간개선단의 관련사업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즉, 도시공간개선단이 소관하는 서울도시건축박물관(붙임8)과 서울 비엔날레는 서울시의 주요 도시·건축 정책·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시민 공유의 공통된 취지가 있으므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박물관

<sup>1) &#</sup>x27;19년 초에 사무국 재구성 예정

과 비엔날레를 통합 운영한다면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비엔날레에 활용하고 비엔날레의 컨텐츠와 행사 효과를 박물관 운영에 활용함 으로써 서로의 연속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제2회 서울비엔날레 개최에 임박한 현재로서는 디자인재단 내사무국을 설치하여 내년 행사를 준비·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사료되므로, 단기적으로 디자인재단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 규모는 '19년 예산안 심사시 그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인<sup>2</sup>).
- 참고로,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된<sup>3)</sup> 가운데, 서울시 투자심사('18.5.)와 행정 안전부 중앙투자심사('18.11.) 각각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음<sup>4)</sup>.

- 4)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18.5.) : 조건부 추진
- 비엔날레의 브랜드 명성에 맞는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17년 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과 평가 지적사항 및 운영시 문제점(건축문화제 중복, 관람정보 제공, 전시물 사후활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민간 후원 유치 및 입장수입 등 자체 수입 증대방안 마련
- 향후 투자심사 의뢰시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첨부할 것

####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18.11.) : 조건부 추진

- 국내·외 관람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관람객 유치 및 홍보 방안 마련
-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대, 판매시설, 광고, 후원금 등 다양한 자체 세입 확보 방안 마련
- 개최 후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보고서 제출

<sup>2)</sup> 이번 출연 동의 건은 시의회 예산심사에 앞서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재정규모 및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됨.

<sup>3)</sup>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74호, 2016.6.30.) 제4조제1항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28

제출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시와 건축을 매개로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시민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으며
- 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예정임
- 다. 이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비엔 날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재)서울디자인재단
- 관련법령
  -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주요 사업(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
-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다각적 홍보
-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방안 수립 및 운영

##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및 도시건축의 진흥·교류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서울의 디자인 등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따라 2017년도 제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건축·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활용한 성공적 사업수행 및 서울디자인재단 조직의 장점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 필요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조 례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①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다. 기 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8. 기타 출판업, 주차장운영업, 디자인상품 도·소매업 및 수출,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라.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마.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 황재철 (☎2133-7622)